

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정관 일부개정

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4조(관장) ① 관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자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.
-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시장은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관장은 수련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4조(관장) ① 관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(관장) ① 관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자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시장은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.</p>